

2006년도 선박검사제도 주요 개정내용

- 「법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1호 2006. 1. 4)
 -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행하는 소형법선에 대하여 예비돛 비치 면제 등
- 「선박안전법」개정(법률 제7929호, 2006. 3. 24)
 -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등
- 「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검정업무규정」제정(2006. 4. 5)
 - 검사업무규정 : 안전검사 신청 및 검사보고서 작성 등 전산시스템 활용, 총톤수 및 정원산출 기준 마련
 - 검정업무규정 : 검정 신청 및 검사보고서 작성 등 전산시스템 활용, 검정합격증명서 및 건명서 교부
- 「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」(제19477호, 2006. 5. 18)
 -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신설
 - 국내항해 선박(2006. 6. 29부터 적용)
 - 황함유량 4.5%미만의 연료유 사용, 본선에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 비치
 - 국제항해 선박(2006. 5. 19부터 적용)
 -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: 황함유량 1.5%미만의 연료유 사용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
- 「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」(제377호, 2006. 5. 19)
 -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
 - 유증기수집제어장치 : 총톤수 400톤 이상 유조선으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(휘발유, 납사, 원유)을 신고자 하는 선박에 설치
 - 유증기배출제어장치 :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 설치
 - 국제협약 개정사항 수용 및 미비점 보완
 -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2-1장 23-3규칙 개정사항 반영
 - 단일 화물창 선박에 침수경보장치 설치
- 「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34호 2006. 6. 20)
 - 방수구 면적 및 그 배치를 구체화함
 - 방수구 면적을 구하는 산식에 필요한 “엘”의 정의 조항 신설
 - 방수구 면적을 구체화 하고 현행선박의 방수구 면적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산식 도입
 -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
- 「선박설비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42호 2006. 6. 30)
 - 호수 · 하천만을 운항하는 유람선 · 도선 등에 대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 설치 면제
 -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에 임시여객정원 지정시 비상탈출로 및 비상소집장소, 통로는 여객정원지정 장소에서 제외함

- 「선박소방설비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42호 2006. 6. 30)
 -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요건 마련
 - 어선의 무인기관실에 대한 소방설비 요건 보완(총톤수 1,000톤 미만 어선)
 - 제2종선 및 제4종선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비치
 -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
 -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
- 「범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53호, 2006. 7. 26)
 - 24미터미만 범선의 선체구조 및 강도에 대하여 내구시험만으로 확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내구시험의 시간을 상향조정하여 범선이 충분한 구조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함
 - 근해이상 항행 범선의 경우 복원성기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코밍 높이에 대하여 항행구역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
- 「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」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55호 2006. 8. 28)
 - 적용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운송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선박의 등급을 3개로 분류
 - 방사성물질 등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
 - 손상 및 비손상시의 복원성기준을 정하고 복원성자료의 선내비치를 의무화함
- 「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58호, 2006. 9.18)
 - 탄산가스로 소화가 곤란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 소화장치 요건을 정함
 - 화물구역 소방설비 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개정(법률 제8016호, 2006. 9. 27)
 -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조종 능력에 따라 조종면허 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
- 「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64호 2006. 9. 28)
 -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제1종선에 대한 구명설비 비치요건 강화
 - 최대탑재인원의 125%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제1종팽창식구명뗏목 비치
 - 근해구역(국제)을 항행하는 제4종선의 팽창식구명뗏목 정비시기 조정
 -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종선의 경우 매년 구명뗏목 정비
- 「선박기관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65호 2006. 9. 28)
 -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를 대비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을 수용하고 협약에서 정한 정부재량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
- 「카훼리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66호 2006. 9. 29)
 - 선수루 설치 면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기준(고시)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 폐지 등

-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개정(해양수산부령 제344호, 2006. 10. 23)
 -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유류 등 위험물저장부선에 대하여 만재흡수선 표시대상 선박에서 제외
 - 초단파대 무선전화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여객선에 대하여 중단파대 무선전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설
 -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 선박에 대하여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를 대체하여 INMARSAT 선박지구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
- 「선박법 시행규칙」개정(해양수산부령 제346호, 2006. 11. 2)
 - 선박의 등록사항에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제외함으로써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경등록 및 선박원부 등본 · 초본교부 신청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 등
- 「밸러스트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」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77호 2006. 11. 8)
 - 밸러스트수관리시스템을 제조 · 수입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함
 - 형식승인을 받은 개별 밸러스트수관리시스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함 ⇒ 선박검사기술협회 및 한국선급은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
- 「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관한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80호, 2006. 11. 10)
 -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사항 수용 및 미비점 보완
 - IEC 60945:2002 개정사항 수용(환경시험기준)
 - 국제구명설비코드(LSA Code, 제1장 1.2.2.6 수용)
 - 기관구역 수분무 소화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지침(MSC Circ. 1165) 반영
 -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의2(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) 성능기준 반영 및 미비점 보완
- 「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」개정(해양수산부령 제349호, 2006. 12. 8)
 -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연료유탱크 및 펌프룸(pump room)의 선체구조를 이중구조로 강화하는 등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과 설비기준 일부조정 등
- 「수중검사준비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90호, 2006. 12. 20)
 -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을 정함 ※ 수중검사 가능 선박
 - 내수면안에서만 항행하는 선박,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(여객선을 제외한다)
- 「선박전기설비기준」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105호, 2006. 12. 29)
 - 전기 누전에 따른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수한 접지방법을 정함
 - 차량의 시동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카페리선박에는 냉동탑차에 본선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함